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8.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6명(6급 4명, 7급 5명, 8급 17명, 9급 20명) 및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설치한 신속수사팀과 출국대기실운영팀의 보임 규정을 추가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원의 교과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담당) 정원 1명의 직무 분야를 교과교육으로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8. 25. ~ 9.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제1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조기적응프로그램(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제3항 중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보호사무관으로, 신속수사팀장은 보호주사로 보한다”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보호사무관으로, 지소 신속수사팀장은 보호주사”로 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과장 및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을 “과장, 전자여행허가센터장 및 출국대기실운영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5. 복수국적자, 국적상실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579”를 각각 “16,625”로, 교감 “1,492”를 “1,496”으로, 교위 “1,831”을 “1,836”으로, 교사 “5,578”를 “5,595”로, 교도 “6,018”을 “6,038”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579”를 각각 “16,625”로, 교감 “1,481”을 “1,485”로, 교위 “1,831”을 “1,836”으로, 교사 “5,578”을 “5,595”로, 교도 “6,018”을 “6,038”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64”를 각각 “967”로, 보호주사 “103”을 “104”로, 보호주사보 “188”을 “189”로, 조리서기보 “56”을 “57”로,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21”을 “20”으로, 전문경력관 나군(교과교육 담당) “13”을 “14”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2027년 9월 30일 까지
2)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1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2명, 7급 3명)	2028년 3월 31일 까지
3) 외국인보호위원회 조사과	13명 (4·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4명)	2028년 3월 31일 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⑩ (생략) ⑪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⑫ (생략)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u><신설></u> ⑭ ~ ⑯ (생략)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출입국·이민정책 관련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u>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조기적응프로그램(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⑭ ~ ⑯ (현행과 같음)
제23조(보호관찰소) ①·② (생략) ③ 보호관찰소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범죄예방 정보화센터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u>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u> ④ ~ ⑪ (생략)	제23조(보호관찰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보호사무관으로, 신속수사팀장은 보호주사로 보한다.</u>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 ~ ③ (생략) ④ 지소의 각 과장은 <u>보호사무</u>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보호사무관</u>

관으로 보한다.

⑤ ~ ⑨ (생략)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③ (생략)

④ 각 과장 및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과장, 서울, 부산, 인천 및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사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⑪ (생략)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1. ~ 6의4. (생략)

<신 설>

으로, 지소 신속수사팀장은 보
호주사로 보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과장, 전자여행허가센터
장 및 출국대기실운영팀장----

[illegible]

⑤ ~ ⑪ (현행과 같음)

⑫

1. ~ 6의4. (현행과 같음)

6의5. 복수국적자, 국적상실자

7. (생 략) ⑬ ~ ⑮ (생 략)	<u>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u> 7. (현행과 같음) ⑬ ~ ⑮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579</u>	<u>16,625</u>	+46
일반직 계	<u>16,579</u>	<u>16,625</u>	+46
.	.	.	
.	.	.	
교 감	<u>1,492</u>	<u>1,496</u>	+4
.	.	.	
.	.	.	
교 위	<u>1,831</u>	<u>1,836</u>	+5
.	.	.	
.	.	.	
교 사	<u>5,578</u>	<u>5,595</u>	+17
.	.	.	
.	.	.	
교 도	<u>6,018</u>	<u>6,038</u>	+20
.	.	.	
.	.	.	

[별표 7의2]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579</u>	<u>16,625</u>	+46
일반직 계	<u>16,579</u>	<u>16,625</u>	+46
·	·	·	
·	·	·	
교감	<u>1,481</u>	<u>1,485</u>	+4
·	·	·	
·	·	·	
교위	<u>1,831</u>	<u>1,836</u>	+5
·	·	·	
·	·	·	
교사	<u>5,578</u>	<u>5,595</u>	+17
·	·	·	
·	·	·	
교도	<u>6,018</u>	<u>6,038</u>	+20
·	·	·	
·	·	·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64</u>	<u>967</u>	+3
일반직 계	<u>964</u>	<u>967</u>	+3
•	•	•	
•	•	•	
보호주사	<u>103</u>	<u>104</u>	+1
•	•	•	
•	•	•	
보호주사보	<u>188</u>	<u>189</u>	+1
•	•	•	
•	•	•	
조리서기보	<u>56</u>	<u>57</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u>21</u>	<u>20</u>	-1
전문경력관 나군(교과교육 담당)	<u>13</u>	<u>14</u>	+1
•	•	•	